예 산 총 칙

2017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538,139,156	46,144,175
일반회계	1,243,970,965	37,319,129
특별회계	294,168,191	8,825,046
공기업특별회계	209,517,052	6,285,512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567,330	47,02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8,884,177	2,966,525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9,065,545	3,271,966
기타특별회계	84,651,139	2,539,534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5,153,374	154,601
수질개선특별회계	9,548,285	286,449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14,140,494	424,215
기반시설특별회계	470,760	14,123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102,210	3,066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163,435	64,903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991,694	209,751
주택사업특별회계	101,857	3,056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42,992,650	1,289,780
지하수특별회계	2,986,380	89,591

제 2 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안)"과 같다.

제 3 조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2017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2,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7,408,735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승인 이후 교부되는 국도비와 교부세는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